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
	2017년 12월 26일(화) 석간 (12. 26. 10:00 이후)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심진홍 사무관 강명구
		연락처	02-2100-0170 02-2100-0175

재난안전통신망, 튼튼한 제도 마련해 기관간 소통 강화한다

- 「재난안전통신망법」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□ 앞으로 공공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안전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.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「재난안전통신망법」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□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'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(PS-LTE)'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, 이번 「재난안전통신망법」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○ '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(PS-LTE : Public Safety - Long Term Evolution)'은 영상이 가능한 재난 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(국제표준)로써 미국, 영국 등에서 구축·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.

□「재난안전통신망법」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재난안전통신망 구축·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.

○ 국내 민간과 공공의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.

○ 이용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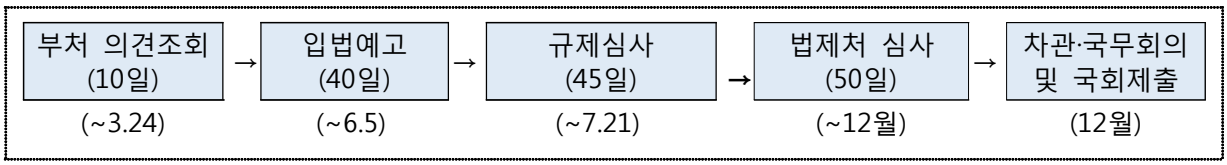
□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“이번 「재난안전통신망법」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·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, 소방·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·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참고 **「재난안전통신망법」 제정(안) 주요내용**

□ 추진배경 및 경과

○ 재난시 다양한 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

○ 추진경과



□ 법안 주요 내용

○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*에 우선하여 적용

* 전기통신사업법, 전파법 등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 경우

○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기본계획, 시행계획, 활용계획 수립

※ 기본계획(5년주기) 및 시행계획(매년)은 행안부에서 수립, 활용계획(매년)은 이용기관에서 수립

○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며,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운영·관리

○ 전기통신사업자등의 전기통신설비등을 제공받거나 공동이용 또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을 요청 할 수 있음

※ 재난안전통신망 구축·운영시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민간·공공의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○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등의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토록 함

○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개발 및 실용화, 인력 양성 및 교육 등